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21호 2015. 1. 7. (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59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60호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하동군 조례 제2061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7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26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 4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10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81차) 46
- 하동군 고시 제2015-1호 2015년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4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7호 2015/2016년 해양수산업 신청방법 공고 50
- 하동군 공고 제2015-15호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56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호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60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21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59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하동군 한다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명 하동군 한다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있는 ‘한다사’는 하동의 옛 지명을 말하며, 하동의 역사와 문화, 하동군민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시상인원) 시상부문 및 시상인원은 제1조에 부합하는 대상자로서 대상 1개 부문에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도 있다.

제4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다른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 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는 제1조에 따라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미 사망한 자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제7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 또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하동군 한다시대상 선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사회 저명인사, 대학교수

3. 군단위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각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수상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① 군수는 이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할 수 있다.

② 이 대상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등 단체설립을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21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60호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를 “시행계획의 시행에”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상남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하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③ (생략)</p> <p>④ 군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_____ _____ _____.</p>
<p>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p> <p>2. 정보화 업무관련 부서장</p> <p>3. 지역정보화 관계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정보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삭 제></p>

하 동 군 공 보

(6) 제 421 호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직위는 그 직위 변동과 동시에 직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제7조(위원회의 기능) <삭 제>
<p>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p>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p>	제9조(회의 및 의결) <삭 제>
<p>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제10조(수당) <삭 제>
<p>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_____ _____ 행정자치부장관 이 _____ _____.
<p>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제21조(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_____ _____ _____ 행정자치부 장관이 _____ _____.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조례 제2061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
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
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
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
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
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동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하 동 군 공 보

(8) 제 421 호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회의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협회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협회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회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그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협회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회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회회의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회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회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협회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협회회의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 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협회회의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회회의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421 호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21 호

제18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민원용 10일 이내, 행정용 3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신청은 현수막 게시대 수급상황에 따라 재신청기간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14) 제 421 호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 제5조“(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로 하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를 “사항 심의는 하동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하 동 군 공 보

(16) 제 421 호

<p>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 별론</p> <p>1) 연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p>2)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p>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p>4) 연면적 10㎡ 이상</p> <p>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 드별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 는 가로형 간판</p> <p>1) 연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p>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p>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p>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p>30만원</p> <p>33만원</p> <p>38만원</p> <p>45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80만원</p> <p>90만원</p> <p>100만원</p> <p>120만원</p> <p>140만원</p> <p>160만원</p> <p>180만원</p> <p>20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30만원</p> <p>33만원</p> <p>38만원</p> <p>45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80만원</p> <p>90만원</p> <p>100만원</p> <p>120만원</p> <p>140만원</p> <p>160만원</p> <p>180만원</p> <p>200만원</p> <p>230만원</p> <p>240만원</p> <p>250만원</p>
--	---

하 동 군 공 보

(17) 제 421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p>5) 연면적 50㎡ 이상</p>	<p>260만원 280만원</p> <p>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1) 선전탑, 아치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p>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p> <p>6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p>30만원 50만원</p> <p>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p>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p> <p>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2) 교통안내소</p>	<p>가로형 간판에 준함</p>	
<p>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1)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p>150만원</p> <p>1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하 동 군 공 보

(18) 제 421 호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하 동 군 공 보

(20) 제 421 호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1,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하 동 군 공 보

(21) 제 421 호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 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 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421 호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하 동 군 공 보

(24) 제 421 호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법 제20조제1항 제1호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연면적 3㎡ 초 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연면적 3㎡ 초과 하는 면적의 0.5㎡당 8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p>나. 현수막</p> <p>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p> <p>가) 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p>라) 면적 10㎡ 이상</p> <p>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8만원</p> <p>12만원</p> <p>13만원</p> <p>17만원</p> <p>22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50만원</p> <p>58만원</p> <p>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p> <p>장당 17천원</p> <p>장당 22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30천원</p> <p>장당 37천원</p> <p>장당 8천원</p> <p>장당 13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30천원</p> <p>장당 37천원</p>	
--	--	--	--

하 동 군 공 보

(26) 제 421 호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 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주 주 명 의 인 신 증 명 서 사 유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m²]

하 동 군 공 보

(28)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 고 필

표 시 기 간
. 까지

하동군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 귀 하</p>			
구비서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p>수수료</p> <p>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30)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31)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15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p>사 진 (3.5×4.5)</p></div>					
하 동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32)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p style="text-align: center;">「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검사자 소속</p> <p>성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직위(직명)</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년 월 일</p> <p>(서명 또는 인)</p> </div>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33) 제 421 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34)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 고 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 월 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 소 · 위 치	⑧ 담 당 (취 급 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하 동 군 공 보

(36)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하 동 군 공 보

(38)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하 동 군 공 보

(40)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p>「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1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하 동 군 수 귀하</p>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전화번호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p>		<p>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하 동 군 수 귀 하</p>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42) 제 421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하동군 규칙 제1126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9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운행대상 마을)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가 정한 범위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대표자가 결정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택시운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 동 군 공 보

(44) 제 421 호

제5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주 3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하동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 택시와 계약한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운행의 예외)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1의 행복택시 운행의 예외규정은 마을이 중간에 위치하여 타 읍·면 소재지까지 거리가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거리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거리로 한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읍면	리	마을	비고(세부지역)
하동읍	흥룡리	먹점마을	
	두곡리	서제마을	
	두곡리	두곡마을	밤골
악양면	신흥리	하신흥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적량면	관 리	관동마을	
	관 리	울곡마을	
횡천면	전대리	전대마을	윗전대
	애치리	애치마을	
	애치리	온동마을	
	학 리	개인마을	
고전면	범아리	매자마을	
	성평리	신덕마을	
금남면	대치리	대치마을	진구지
	진정리	금오마을	
	계천리	계항마을	
금성면	궁항리	객길마을	
진교면	고룡리	남양마을	
	송원리	화포마을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	
	지례리	가락마을	
청암면	중이리	심답마을	
옥종면	월횡리	고암마을	윗고암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외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이상으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하동군 고시 제2014-10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81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3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333-108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7) 제 421 호

업무 구분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옥종면 위태리611-1	경상남도하동군옥 종면 돌고지로 1333-108	20141231	20070618	황천과 옥종의 경계지점 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 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 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 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악양면 신성리652-6	경상남도하동군악 양면 성두길43-17	20141231	20070618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복두칠성 별자리처럼 놓 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 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덕은리122	경상남도하동군화 개면 중터길30-17	20141231	20070618	남쪽의 새터가 생기자 중터라고 부른 옛지명에 서 유래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적량면 관리536-1	경상남도하동군적 량면 관동길61-23	20141231	20070618	관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적량면 관리536-2	경상남도하동군적 량면 관동길61-27	20141231	20070618	관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옥종면 청룡리142-36	경상남도하동군옥 종면 청안길3-1	20141231	20080402	옛날부터 전해온 이름 청룡안길의 줄임말로 청 안길로 명명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금남면 중평리313-1	경상남도하동군금 남면 온방길41-9	20141231	20080402	옛날 온수가 나왔다고 하는 상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대성리1768-5	경상남도하동군화 개면 벽소령길151	20141231	20090302	산 봉우리 이름으로 마 을명 부여보다 인지도 있 어 지형적 특성 반영 부여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청암면 묵계리385-10	경상남도하동군청 암면 고운동길33-12	20141231	20090702	고운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 물 번 호 부 여	경상남도하동군 양보면 장암리482	경상남도하동군양 보면 진양로1008	20141231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 하는 구간선도로로 진교 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 "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15-1호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일

경상남도 하동군수

I.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신축건물기준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 ② 적용지수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④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하동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 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하동군 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50) 제 421 호

하동군 공고 제2015 - 7호

공 고

해양수산부 훈령 제201호(2014.12.09)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2. 6일(금)까지
- 신청대상
 - 해양수산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대상사업 : 어업인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
- 지원조건
 - 2015년 미확정 해양수산사업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고시·공고란 // 2015/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방법 공고 참조
 - 2016년 해양수산사업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 2015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신청장소 : 하동군청 경제수산과, 하동군 읍면사무소
- 신청안내기관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사업담당부서 : 경제수산과 해양개발(880-2443~2444), 어업생산(880-2453~2455)
 - 유 관 기 관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주요대상사업

- 불임 2015/2016년 해양수산사업 대상 목록 참고
 - ※ 세부내용은 해양수산사업지침서(별첨) 참고

2015년 해양수산사업 미확정 내역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보조율(%)			신청자격
			계	보조금	자담	
계	18		853,000	562,600	290,400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재 제작 지원	3개소	개소당 10백만원	30,000	18,000	12,000	청경해 지정 업체
경남 추천상품 (QC) 수산물 활성화 지원	2개소	개소당 15백만원	30,000	18,000	12,000	QC 지정업체
수산물 저온시설지원	1식	예산범위 내	60,000	30,000	30,000	어업인단체, 어업인
수산가공품 포장 시설 제작 지원	1식	예산범위 내	80,000	40,000	40,000	어업인
건조시설 지원	3대	1대당 30백만원	90,000	63,000	27,000	어촌계 어업인
멸치 포장재 제작지원	1식	예산범위 내	30,000	15,000	15,000	어촌계
재첩포대 제작 지원	1식	예산범위 내	10,000	7,000	3,000	어업계, 어업인단체
어선인양기 대차 구입 지원	4개소	개소당 5백만원	20,000	20,000	-	어촌(업)계
패각 파쇄기 설치	1개소	예산범위 내	20,000	20,000	-	어촌계 어업인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대	예산범위 내	100,000	80,000	20,000	육상해수, 종묘생산어업인
위해생물구제 (산소발생기 설치)	2대	예산범위 내	100,000	70,000	30,000	어업인, 어촌계 등
뉘시터 환경개선	1개소	예산범위 내	30,000	30,000	-	어촌계
불가사리 구제	14톤	예산범위 내	7,000	7,000	-	어업인, 어촌계 등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	2개소	예산범위 내	100,000	50,000	50,000	어업인, 어촌계 등
재첩 선별기 지원사업	1대	개소당 30백만원	30,000	21,000	9,000	어업계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	10대	대당 4백만원	40,000	28,000	12,000	어업인
소형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	10대	대장 5.5백만원	55,000	33,000	22,000	어업인
에너지 절감형 어선작업등 설치사업	10대	대당 2.1백만원	21,000	12,600	8,400	어업인

하 동 군 공 보

(52) 제 421 호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대상

사업명	지원단가	지원율(%)			신청자격
		보조	융자	자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대당 100백만원	80	-	20	육상해수, 종묘생산어업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개소당 14.4백만원	100	-		어촌휴양마을 지정 어촌계
뉴시터 환경개선 사업	한도액 없음	100	-		어촌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한도액 없음	60	-	40	수협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한도액 없음	80	-	20	굴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 하는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지급	100	-		연안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지원사업	실수요 사업비	60	-	40	연안어업허가 어선 및 관리선 소유자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	한도액 없음	60	-	40	수협, 어촌계, 어업인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한도액 없음	90	-	10	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한도액 없음	70	-	30	수협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한도액 없음	50	-	50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당 30백만원	80	-	20	어업인, 어촌계, 수협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대당 70백만원 (인양중량 7.5톤급)	100	-	-	어촌(업)계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	한도액 없음	60	-	40	경남 추천상품 지정 품목 업체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지원	한도액 없음	60	-	40	청경해 브랜드 사용지정 품목(업체)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사업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수출주력품종 홍보지원사업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수산물 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수출수산물 제품 개발지원사업	한도액 없음	80	-	20	수협, 가공(수출)업체, 경남도QC지정업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개소당 50백만원	80	-	20	어촌계
불가사리 구제사업	한도액 없음	100	-	-	어업인, 어촌계, 지역환경단체 등

※ 상기 사업 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시는 우리군 경제수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 : 제6조제3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m ²)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하 동 군 공 보

(54) 제 421 호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용 자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 산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용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하 동 군 공 보

(56) 제 421 호

하동군 공고 제2015-15호

공 고

농림축산식품부시행지침서에 의거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하 동 군 수

■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5. 2. 6일까지
-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대상사업 : 농업인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
- 지원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 자료검색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우측 상단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군청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신청안내기관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군청담당부서 : 산림녹지과(880-2461), 건설교통과(880-2511), 국제통상과(880-2861)
 -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880-2411), 농촌사회과(880-2741), 소득지원과(880-2711)
 - 농업관련 유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하동남해지사, 농협중앙회(각 회원조합포함),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계획

- 총사업계획 : 70개사업(자율사업 52, 공공사업 18)

■ 주요대상사업 : 농림축산식품 시행지침서(별첨)

[별표1 : 제3조제3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대 분류	중 분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70)		(52)	(18)
[식량분야 10]		(6)	(4)
	I. 생산기반확충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해외농업개발(유자)사업	중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기계임대사업
	II. 생산 및 유통 개선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원예식품분야 18]		(17)	(1)
	I. 생산 및 유통 개선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하 동 군 공 보

(58) 제 421 호

<p>[임업 및 산촌 분야 7]</p>	<p>I. 생산 및 유통 개선</p> <p>II. 산림자원조성</p>	<p>(6)</p> <p>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사업</p>	<p>(1)</p> <p>조림·숲 가꾸기사업</p>
<p>[농촌개발분야 22]</p>		<p>(15)</p>	<p>(7)</p>
	<p>I. 생산 및 유통 개선</p> <p>II. 기술개발</p> <p>III. 인력육성</p> <p>IV. 소득보전</p> <p>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p>	<p>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토양개량제지원)</p> <p>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p> <p>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p> <p>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p> <p>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p> <p>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p>	<p>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용자)사업</p> <p>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p> <p>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지장운영사업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사업</p>
		<p>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p>	<p>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p>

하 동 군 공 보

(59) 제 421 호

<p>[축산분야 10]</p>	<p>I. 사육기반확충</p> <p>II. 생산 및 유통 개선</p>	<p>(8)</p> <p>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p> <p>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p> <p>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p> <p>말산업육성지원사업</p> <p>축사시설현대화사업</p> <p>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p> <p>축산자조금지원사업</p> <p>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p>	<p>(2)</p> <p>축산물수급관리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p> <p>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p>
<p>[지특회계분야 3]</p>		<p>(0)</p>	<p>(3)</p> <p>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p> <p>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p> <p>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p>

하 동 군 공 보

(60) 제 421 호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호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일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자격요건
지역농업개발시설꽃묘생산관리	7명 (남 여)	지역농업개발시설	◦ 지역농업개발시설 꽃묘생산 및 시설관리 ◦ 관내 시가지 등 꽃묘식재 및 경관용 화분 관리 ◦ 그린투어리즘 공원 작물 및 시설물 관리 ◦ 과학영농시설 및 학습시범포 작물관리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화훼분야 농작업 가능 자 ◦ 공고일 이전에 하동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5년 2월 1일 ~ 2015년 11월 30일(10개월)

- 계약기간은 예산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보 수 : 일당44,640원(단가인상시 인상분지급), 주차 연차유급수당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용양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임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기준

- 근무시간, 근무요일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마. 4대보험가입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바. 기타 : 기타 근로조건은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2015. 1. 1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꽃묘생산, 시설관리 등 단순 육체노동작업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나. 제외대상

-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 기타 군수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우대조건

- 화훼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화훼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동점자인 경우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다가족부양, 다문화가정 순으로 선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였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50%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제출기간 : 2015년 1월 12일 09:00 ~ 2015년 1월 21일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하 동 군 공 보

(62) 제 421 호

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양식)
- 이력서 1부(붙임양식)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제출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6.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 2015. 1. 23(금)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15. 1. 26(월) 15:00 예정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1층 상황실

다. 합격자 발표 : 2015. 1. 28(수)

- 방법 : 개별통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채용희망지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통보)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아래 전화를 이용바랍니다.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관광담당(☎055-880-2682)

<붙임 1>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본인은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험 합격이 무효처리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응시자 : (인)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응시 번호			응시분야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사진 반명함판 3.5cm×4.5cm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새주소 : E-mail :				
연락처 (전화)	자택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학교	전공	학과
	(졸업·졸업 예정)				

※ 최종학력란의 전공은 해당자만 작성

응 시 표					사진 반명함판 3.5cm×4.5cm
응시분야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성 명	(한글)	(한자)	
※ 응 시 번호		주민등록 번호	-		
2015년 월 일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성 명 : 반드시 정자로 기재
 - ②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 ③ 응시분야 :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분야 표시
 - ④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
 - ⑤ 전화번호 : 자택과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 ⑥ 학 력 : 반드시 기재
 - ⑧ 사진부착 : 2군데(3.5cm×4.5cm)
- 『※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응시 번호		응시분야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사 진 (3.5cm×4.5cm)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주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나이	관계	성명	나이	
신체 조건	키	체중		시력			
자격 면허	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사무	발 령 청	

2015년도 지역농업개발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15 작성자 : (서명)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